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
----------	-----

발의연월일 : 2019. 10. 10.

발의의원 : 김정태 의원, 이대곤 의원

1. 제안이유

- 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본 조례상 일반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등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을 추가하고,
- 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대형폐기물 분류항목에 소화기가 포함되도록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인 [별표1]에 소화기 항목을 추가(안 제18조)
- 나.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항목을 추가(안 제21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18조제1항제4호 중〔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 ----- -----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u><신 설></u>	1. -----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2. 저소득 주민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3. -----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제2조 및 제18조 관련)

○ 가전제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냉장고	500 ℓ 이상	9,000
	300 ℓ 이상 500 ℓ 미만	7,000
	300 ℓ 미만	5,000
세탁기	8kg 이상	6,000
	8kg 미만	5,000
탈수기	모든 규격	2,000
청소기	업소용	2,000
	가정용	1,000
가습기	모든 규격	1,000
다리미	모든 규격	1,000
팩스기기	모든 규격	2,000
에어컨디셔너	264㎡형(80평)이상	8,000
	66㎡형(30평)이상	6,000
	66㎡형(30평)미만	3,000
T.V	42인치 이상	6,000
	42인치 미만	3,000
전축	대형70cm×65cm이상, 케이스 포함	10,000
	소형70cm×65cm미만, 케이스 포함	7,000
스피커	모든 규격	2,000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컴퓨터	모니터, 본체, 노트북	2,000
복사기	높이 1m이상	7,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이상	5,000
전자(가스)렌지	모든 규격	2,000
선풍기	업소용	2,000
	가정용	1,000
공기청정기	높이 1m이상	3,000
식기세척기	모든 규격	3,000
난로	석유난로	3,000
	전기난로	2,000
기타소형가전	모든 제품	1,000
오락기	업소용(높이 1m미만)	3,000

○ 가구류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장롱	120cm장 1쪽	15,000
	90cm장 1쪽	10,000
쇼파	1인용	3,000
	1인 추가시	1,000
식탁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상(판)	모든 규격	2,000
싱크대	120cm×50cm이상 1쪽	7,000
	120cm×50cm미만 1쪽	5,000
책상	양수, 대형	6,000
	편수, 소형	5,000
책장(책꽂이)	120cm×180cm 이상	10,000
	50cm×90cm초과 120cm×180cm미만	6,000
	50cm×90cm이하	3,000
침대	2인용(더블) 구조물	6,000
	1인용(싱글) 구조물	5,000
	2인용(더블) 매트리스	7,000
	1인용(싱글) 매트리스	5,000
돌침대	1인용	15,000
	2인용	20,000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의자	대형(팔걸이 의자)	2,000
	소형(팔걸이 없는 의자)	1,000
장식장	120cm×180cm이상	13,000
	90cm×180cm이상 120cm×180cm미만	9,000
	90cm×180cm미만	3,000
화장대	거울 부착	6,000
	거울 미부착	3,000
문갑	120cm이상	3,000
	120cm미만	2,000
서랍장	6단	8,000
	5단	7,000
	4단	5,000
	3단 이하	3,000
신발장	90cm×150cm이상	6,000
	90cm×150cm미만	3,000

○ 기타 생활용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쌀통	모든 규격	2,000
벽시계	대형(높이1.5m이상)	3,000
	중형(높이0.5m이상)	2,000
	소형(높이0.5m미만)	1,000
장난감 (인형등)	10kg	2,000
	5kg	1,000
가방류	모든 규격	2,000
거울·액자	70cm×100cm이상	3,000
	40cm×80cm이상	2,000
	40cm×80cm미만	1,000
캐비닛	90cm×150cm이상	5,000
	90cm×150cm미만	3,000
피아노	그랜드	18,000
	업라이트	13,000
	디지털	5,000
문짝, 창문	1㎡ 당	2,000
수족관	1㎡ 이상 1㎡ 당	6,000
	0.5㎡ 이상 1㎡ 미만	9,000
	0.5㎡ 미만	5,000
자전거	성인용	3,000
	어린이용	2,000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유리	1㎡ 당	2,000
항아리	대형 1개당 1㎡ 이상	5,000
	중형 1개당 0.5㎡ 이상 1㎡ 미만	2,000
	소형 1개당 0.5㎡ 미만	1,000
세면대	개 당	3,000
목재	kg 당	1,000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변기	좌변기	5,000
	소변기	3,000
	유아용	2,000
전기담요 등	전기장판	2,000
	옥매트(2인용)	6,000
	옥매트(1인용)	3,000
이불 등	솜이불(장당)	2,000
	일반이불(장당)	1,000
	발매트	1,000
물탱크(F.R.P)	1㎥ 이상	10,000
	1㎥ 미만	5,000
카펫	3.3㎡ 당	5,000
애완동물집	모든 종류	3,000
아이스박스	모든 종류	2,000
옷걸이	모든 종류	2,000
마대	20Kg 당	3,000
소화기	20kg 이상	18,000
	6.5kg 이하	5,000
	3.5kg 이하	3,000

- ☐ 상기외의 대형폐기물은 중량 및 크기를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 ☐ 폐가전의 경우 부품이 완전한 경우 무상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부품이 일부 없을 경우 유상수거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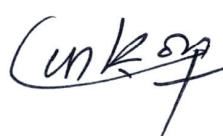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 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발 의 자 서 명 부

의 원 명	서 명	날 인
김 정 태	김 정 태	
이 대 곤	이 대 곤	

